

●기획재정부고시 제2025-35호

기획재정부고시 제2025-15호(2025.4.24. 시행)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.4.24.~2025.8.23.(4개월)에서 2025.4.24.~2025.11.23.(7개월)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08월 22일

기획재정부장관

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
부과기간 연장

1. 부과 내용

가. 부과 대상 공급국 : 중국

나. 부과 대상 물품 : 두께가 4.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(Hot-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)

○ 관세분류(HSK) : 7208.51.1000, 7208.51.9000, 7208.52.1000, 7208.52.9000,
7225.40.9010, 7225.40.9091, 7225.40.9099

○ 단,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.

- ① 열간 압연 코일(Coil) 형태 제품
- ② 냉간 압연을 한 것

다.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잠정 덤핑방지 관세율(%)
중국	1. 바오스틸(Baoshan Iron & Steel Co., Ltd.)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27.91
	2. 장수사강(Jiangsu Shagang Steel Co., Ltd.)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29.62
	3. 상탄스틸(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., Ltd.)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8.02
	4. 사이노 인터내셔널(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. Ltd.)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8.02
	5. 샤먼 아이티지(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., Ltd.)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8.02
	6. 그 밖의 공급자	31.69

라. 부과기간 : (당초) 2025. 4. 24. ~ 2025. 8. 23. (4개월)

(변경) 2025. 4. 24. ~ 2025. 11. 23. (7개월)

마. 기타 행정사항

-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